

Ī

2024년 제도개선 추진경과

기본지침 마련 및 통보 (~'24.3월)

- ☑ 현행 연구제도 분석 및 현장 건의사항 등을 기반으로 '24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방향인 기본지침(안) 마련
 - ※ 국가R&D 제도에 대한 내·외부 의견과 함께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향(안)에 반영
- ☑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기본지침 확정 및 관계부처 통보

2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 접수 ('24.4월~5월)

- ☑ 온라인 창구,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
- ☑ 부처, 온라인,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129건 의견 접수, 제도관련성 및 명료성 등을 고려하여 총 67건에 대해 중점검토 추진

3 연구현장·관계부처의 제도개선 의견 검토 (24.6월~7월)

- ☑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검토위원회를 통해 중요성, 파급효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상 우선순위 선정 / 연구자, 기업, 전문기관 대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병행
- ☑ 관계부처,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 개선(안) 협의 등 실시
 - ※ IRIS(온라인) 의견 접수 방법 :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iris.go.kr 접속 -> R&D신문고 -> 연구현장 의견제안 -> '혁신법 개선 제안' 클릭



2024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방향



/ 추진방향 /

학생·육아휴직자 등 연구자 지원 및 연구편의성 강화

- ☑ 학생연구자, 육아휴직자, 우수연구자 등이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 기술료 부담 완화 및 연구관리시스템 편리성 개선



2 연구비 부담 완화 및 연구비 관리 기준 현실화

- ☑ 기업의 **연구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적극적 R&D 참여를 촉진**
- ☑ 연구비 용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기준 명확화



평가 전문성 강화 및 연구윤리 책임성 제고

- ☑ 평가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여 최고 수준의 R&D과제를 지원하고,
- ☑ 성실한 연구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윤리 확보 체계 강화





2024년 행정제도 개선 : 추진과제

1

학생·육아휴직자 등 연구자 지원 및 연구편의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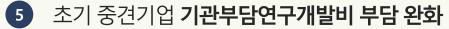
2

연구비 부담 완화 및 연구비 관리기준 현실화

3

평가 전문성 강화 및 연구윤리 책임성 제고

- **1**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연구 몰입환경** 조성
- ② 육아휴직자 **퇴직급여충당금** 등 지원
- 3 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 및 **우수성과자 보상 강화**
- 4 연구지원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강화



-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시기 유연성 제고**
- 시험분석서 발행 및 소프트웨어 현물계상 허용 확대
- 8 인건비계상률 산출로 인한 **행정부담 완화**
- 9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 10 평가위원 **행동강령 도입** 및 **명단공개**
- 11 제재부가금 등 미납 시 **불리한 대우 근거 마련**
- 12 연구 종료 후 **협약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 명확화**









(1)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연구 몰입환경 조성

현장의 목소리

"연구책임자의 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가 지급받는 인건비의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연구 생활이 어려움**" " 과제 변동과 상관없이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잔액제도를 도입했으나, 잔액 대비 **학생인건비 지급율이 낮고 시기별 편차 지속**"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계정 운영 시 국가R&D 참여 학생연구자 50% 이상이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도록 세부계정 설치
- ✓ 기관 단위로 잔액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나,연구책임자 단위 규정 부재
 - * 과도한 적립 방지를 위해 기관 전체 누적 잔액 + 당해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의 50% 이상 학생인건비로 지급 필수(1차 위반 시 통합관리 전환 의무화)

< 참고사항>

· (학생인건비 특례 개요)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과제 단위 → 연구책임자 또는 기관단위로 관리·사용

개선사항

✓ 기관 전체계정과 세부계정 병행 설치 가능,연구책임자 계정 잔액 일부를 기관계정으로 이체

기존 개선 기관 전체 학생의 50% 기관 단위 관리 이상이 기관계정에서 삭제 운영 요건 학생인건비 수급 권고 연구 책임자 단위 연도말 기준 잔액 일부 잔액 관리 관리규정 부재 기관계정 이체 (1차 위반) 기관단위 학생인건비 (1차 위반) **삭제** 통합관리 전환 의무 지급비율이 (2차 위반) (2차위반) 총수입액의 50% 통합관리기관 지정 통합관리기관 지정 이하인 경우 취소가능 취소가능



(2) 육아휴직자 퇴직급여충당금 등 지원

현장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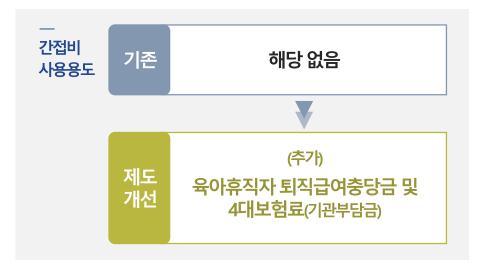
"**연구자의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연구개발기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고충** 발생"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R&D과제 참여 등
 근로활동 불가하여 정부R&D 연구비를 휴직자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등 포함)로 사용 불가
- ☑ 연구기관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육아휴직 중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료를자체재원으로 납부 중으로,
 - 연구기관의 재원 부족, 비전임교원 등 연구자의 고용 불안 우려

개선사항

☑ 과제수행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급여 충당금 및 4대보험료를 간접비로 사용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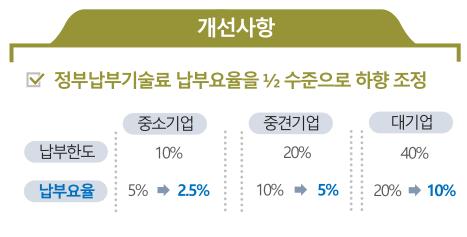
(3) 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 및 우수성과자 보상 강화

현장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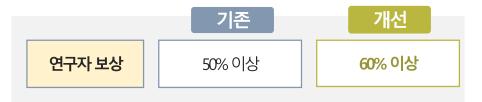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 의욕 제고** 및 연구자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보상 강화**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 영리기관은 정부R&D성과를 통해 발생한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
 - 혁신법 시행이후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유인을 위해 추가적인 경감 필요
 - * (혁신법 시행전 납부요율)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10%), 중견(20%), 대기업(40%)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수입은 연구자 보상(50% 이상)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10%이상), 사업화비용(15%이상) 등에 사용
 - 현장 사기진작 및 **우수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 **연구자 보상 강화** 필요



☑ 비영리기관 기술료 수입 중 연구자 보상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술료 비중을 60% 이상으로 상향





(4) 연구지원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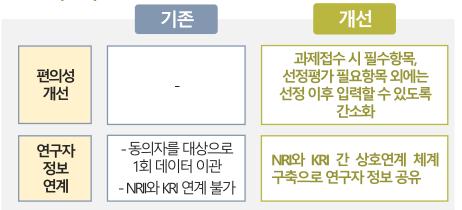
현장의 목소리

- "● IRIS 접수 입력 편의기능, ② 계상률·연봉정보 중복 입력 개선,
- ❸ KRI 연구자 정보의 NRI 연계, ❹ 연구기관 소관 과제 관리기능 등 IRIS 사용자 편의성 개선 요청".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접수 정보 간소화, 시스템 성능 및 사용자 편의 기능에 대한 개선 요구
 - ※ 권역별 연구자 간담회(23~24년 5회), 기관담당자 인터뷰(2465일~13일, 4개 연구기관), RIS 내 R&D신문고(상시) 등을 통해 연구현장 의견수렴

- ☑ IRIS를 통한 접수 항목 간소화,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연구자) 검색·사용 편의 및 정보입력, 자료제출 등 행정부담 완화 (기관담당자) 소관 과제 현황 파악 및 연구지원 편의성 중심으로 개선
- ☑ NRI와 KRI 간 상호 연계로 연구자 정보 중복 입력 최소화





(5) 초기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완화

현장의 목소리

"초기 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연구개발비를 일률적인 비율로 부담하여 정부R&D 참여에 애로"

현황 및 문제점

- ✓ 중견기업의 범위와 상황이 다양한데도 기업규모를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부R&D 연구개발비*부담비율 설정
 - * 중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상을 부담하고, 그중 13%를 현금으로 부담할 의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 - *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개선사항

☑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현금 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담 완화

구분	중소 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부담율	25% 이상	30% 이상	50% 이상
현금 비율	10% 이상	13% 이상 (신규)초기 중견은 10% 이상	15% 이상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시기 유연성 제고

현장의 목소리

"기관부담연구비 납부 시 연구과제 시작·종료시점이 다양하므로 **과제별 상황**을 반영하여 **납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일부 기관에서 **현금 기관부담연구비를 납부하지 않아 재정누수** 및 외부 지적 우려"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0조)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거나...연구 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한다.

- ☑ 모든 과제에 대해 납부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제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 * 상반기에 시작하거나 종료 3개월 도래 전에 종료 과제시작 전 납부가 필요한 과제 등
 - 또한, 연구기관의 납부**기한 혼동**, 부담금 미납시 **납부안내 시간 부족** 등으로 부담금 납부 관리가 비효율적

개선사항

- ☑ 과제상황 등에 따라 부처에서 납부시기를 정하되, 정하지 않는 경우 연차 종료 3개월 전까지로 유연화
- ✓ 기관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 개선 연구개발비 부담 기한 개선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 부처(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정할수 있음



(7) 시험분석서 발행 및 소프트웨어 현물계상 허용 확대

현장의 목소리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후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평가에 필요한 시험분석서 발행 비용이 불인정되어 애로사항 발생" "소프트웨어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사용되는 자산임에도 현물 계상이 불가하여, 자산이 한정적인 중소기업 등에 애로"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비용은* 과제종료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 보고서 발간 평가 관련 비용, 공공요금, 논문게재료 등(연구비 사용기준 제22조④)
 - 다만, **시험분석서 발행**은 포함되지 않아 **정산 시 불인정** 사례 발생
- ✓ 소프트웨어는 연구에 활용되더라도 현물 계상 대상에서 제외

개선사항

- ☑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예외 사항에 '시험분석서 발행 비용' 추가
- ☑ 연구개발기관이 구입 또는 임차하여 연구목적으로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현물 계상 인정(구입가 또는 임차비의 20% 이내)

* 범용성 사무용 소프트웨어(Mindows MS-office 한글등) 및 자체개발소프트웨어는 제외

	기존	개선
과제 종료 이후 사용 가능한 비용	-	(추가) 시험분석서 발행 비용
현물계상 사용 용도	-	(추가) 소프트웨어 활용비



(8) 인건비계상률 산출로 인한 행정부담 완화

현장의 목소리

"인건비계상률 산출기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과 인건비 총액 산출기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이 달라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현황 및 문제점

- ☑ 과제에서 실제 사용된 인건비 총액*과 인건비 계상률** 산출 시 사용되는 인건비 금액이 달라 연구 현장 혼란
 - * 인건비 총액(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인건비의 합)
 - =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퇴직급여충당금
 -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계약에 따른 참여연구자 연급여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참여연구자 급여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성격으로 기준을 통일할 필요



(9)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현장의 목소리

"우수연구자가 곧 **우수한 연구과제의 평가자**가 될 수 있도록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현황 및 문제점

 현장에서 감사 부담 등으로 상피제를 규정*보다 엄격하게 운영하여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

※(필수 제외) 평가대상 과제 연구자,(선택적 제외) 동일기관 소속 연구자 등

 평가대상 과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최고 전문가가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여 평가에 대한 불신 확대 우려

개선사항

☑ 제척범위를 동일 기관에서 동일 부서 단위로 축소

•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최하위 단위까지 축소

상피제 완화

기존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대학, 정출연, 과기출연연, 특정연은 최하위단위 부서 제외 가능



제도 개선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

학과, 학부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단위 부서



(10) 평가위원 행동강령 도입 및 명단공개

현장의 목소리

"평가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 필요" "연구과제 선정결과 통보 시 선정여부만 공개될 경우 **평가결과 및 보완의견** 등이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환류되지 않음**"

현황 및 문제점

- ☑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 할수 있도록 평가위원행동강령을 마련하여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필요
- ▼ 평가종합의견 및 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평가 책임성 제고 필요

< 행동강령 주요내용>

- · (평가위원 의무) 피평가자와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서약서 제출 · (이해상충의 기준) 피평가자와 금전적/직무적/인적 관계 여부를 확인 ※ (금전적) 최근 3년 이내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얻을 예정, 피평가기관 주식 등 보유 (직무적) 해당과제에 공동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 • (인 적) 최근 3년내 공동연구 또는 고용관계 등, 사제관계 등 밀접한 관계
- · (위반시 조치) 평가위원으로서 활동 제한

- ☑ 이해상충 기준 및 평가위원 의무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 평가위원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
- ☑ 평가 결과(종합평가의견 등) 및 평가위원 명단을피평가자에게 공개





(11) 제재부가금 등 미납 시 불리한 대우 근거 마련

현장의 목소리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참여제한과 별개로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미납**에 대한 **불리한 대우**의 제도적 근거 불분명"

현황 및 문제점

- - ※ (혁신법시행령 제12조제5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 1.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의무 불이행자의 경우 성실한 연구자 및 납부 완료 연구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 신청・수행하는데 불리한 대우 필요

개선사항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 의무 불이행 중인 경우 과제 신규 선정・지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

선정 시 불리한 대우 요건

기존

- 제재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 수행 포기



제도 개선 (추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 의무 불이행중인 경우



(12) 연구 종료 후 협약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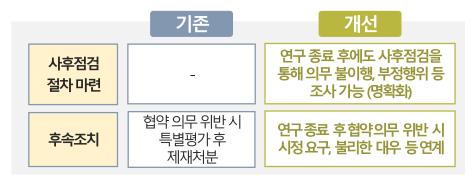
현장의 목소리

"연구 종료 후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협약 또는 규정 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사 및 조치 절차 모호"

현황 및 문제점

- ✓ 주요 보고서 미제출, 부적절한 성과관리 등 연구 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법•협약의무를 불이행하여 국가R&D 관리에 애로
- ☑ 연구 종료 후 부정행위 발견* 시 조치절차 및 법•협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 근거가 불명확
 -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필요한 검증·조치 실시(협약종료 여부 불문)
 - **특별평가에 따라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를 제재사유로 규정

- ✓ 사후점검 절차 명확화* 및 과제 후속관리 지원**
 - * 부정행위 조치 및 법·협약상 의무는 연구종료 후에도 이행해야함
 - ** 과제정보관리 · 현행화, 사후점검 등 후속관리 기능을 연구관리시스템에 반영
- ☑ 연구 종료 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시정요구,불리한 대우, 제재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 ※ 고의적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 사유로 규정 검토





2025년 제도개선 추진일정(안)



참고 안내 사항

🛂 혁신법 관련 참고자료

종합매뉴얼

··· 혁신법 매뉴얼,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과기정통부홈페이지 게재

분야 매뉴얼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매뉴얼, 기술료제도 매뉴얼, 연구노트 매뉴얼,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지침

··· 과제평가 표준지침, 초기 중견기업 기관부담 연구비 가이드라인, 연구윤리 길잡이 등

🖺 사업 및 과제 관련 문의

사업운영, 과제관리, 연구수행 등 세부사항



소관부처 및 전문기관(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湰 혁신법령 관련 문의



R&D 신문고

과기정통부

- ▲ 연구 성과 · 기술료(성과평가정책과),
- ▲ **연구과제평가**(연구평가혁신과),
- ▲ 제재처분 · 보안 (연구윤리권익보호과),
- ▲ **연구비 · 협약 등 기타**(연구제도혁신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감사합니다



